

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4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2.08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2조(정의) “학과 구조조정” 이란 본 대학교 설치학과의 신설, 통합, 변경, 모집정지, 폐과, 과원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제3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 학과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4조(학과평가 기준 및 결과 활용) ① 학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학과를 선정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02. 08.>

② 학과평가는 신입생총원율, 재학생총원율, 건보취업률 등 세 가지 지표로 매년 평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③ 제2항의 3가지 지표 중 신입생총원율은 당해 연도(평가연도)를, 재학생총원율은 전년도 결과를, 건보취업률은 최근 정보공시 결과(4.1기준)를 적용한다. <신설 2014. 11. 01.>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제5조(구조조정 대상 학과 기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조정 학과가 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1. [별표1]의 절대점수 세 가지 기준에서 두 개 기준이 미달하는 학과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2. 학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모집정지 적용을 받는 학과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3. <삭제 2014. 11. 01.>

4. [별표1]의 신입생총원율 기준 미달 학과 <신설 2021. 02. 08.> <개정 2021. 12.

01.>

제6조(구조조정학과의 자구노력계획서) ① 구조조정학과는 신입생충원율, 재학생충원율, 취업률의 향상계획과 다음 각 호 중 우선순위를 정한 내용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서를 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02. 08.>

1. 신규학과 개설

2. 학과전환

3. 학과에 소속을 두고 있는 교원(산학협력중점교원, 취업전담교원, 입시홍보전담교원, 교양전담교원 등)

4. 명예퇴직 등

② 학과 구조조정은 통합을 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입시결과에 따라 증원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③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통합은 기존학과의 모집정지(폐과)를 전제로 하며 기존학과의 차년도 신입생 모집 선발을 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 11. 01.> <개정 2021. 02. 08.>

④ 신설학과는 그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정원조정을 시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 11. 01.>

⑤ <삭제 2021. 02. 08.>

⑥ 총장은 제출된 자구노력계획서를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학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2. 08.>

⑦ 구조조정학과는 [별표1]의 해당 기준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자구노력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2. 08.>

제7조(구조조정학과 교원의 처우) ① <삭제 2021.02.08.>

② <삭제 2021.02.08.>

③ <삭제 2021.02.08.>

④ <삭제 2021.02.08.>

⑤ <삭제 2024.03.01.>

⑥ <삭제 2024.03.01.>

제8조(구조조정학과의 모집정지) ① <삭제 2021. 02. 08.>

② <삭제 2014. 11. 01.>

③ 구조조정학과 중 다음연도 신입생충원율 미달 학과 또는 3개 지표(신입생충원율, 재학생충원율, 건보취업률) 중 1개 지표 이상 동일지표 미이행할 경우 모집정지할 수 있다. 다만 구체적인 모집정지(안)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신설 2020. 03. 01.> <개정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④ <삭제 2021. 02. 08.>

제9조(모집정지 학과장의 의무) 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모집정지로 결정된 학과는 차년도 신입생을 모집·선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② 모집정지가 결정된 해당학과는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제10조(모집정지학과 교원의 의무) ① 모집정지 대상 학과로 결정된 학과의 전임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자구노력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2. 08.>

1. 신규학과 개설

2. 학과전환

3. 학과에 소속을 두고 있는 교원(산학협력중점교원, 취업전담교원, 입시홍보전담교원, 교양전담교원 등)

4. 명예퇴직 등

② 총장은 제출된 신청자료를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③ <삭제 2014. 11. 01.>

④ <삭제 2014. 11. 01.>

제11조(모집정지학과 교원의 처우) 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교원의 신청이 채택된 경우 전환일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를 발령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2.08., 2021.12.01.>

② <삭제 2024.03.01.>

③ 개설된 신규학과 및 소속이 변경된 교원의 신분은 소속 학과가 폐지될 시 「사립학교법」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④ <삭제 2021.02.08.>

⑤ <삭제 2021.02.08.>

제12조(과원) ① 학과의 전임교원 과원 산정기준은 학과별 법정정원 산출기준에 의하되, 전임교원확보율 80%를 초과하는 경우 과원으로 본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전임교원 법정정원 산정 시 학생수는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③ 과원의 산정시점은 매 학년도 교육부 재적생 변동보고 시점기준인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④ <삭제 2014. 11. 01.>

⑤ 과원이 있는 학과 교원은 연구년제와 교원성과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20. 03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⑥ 학과 및 전공의 최소 입학정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교원확보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02. 08.>

제13조(소속변경 교원에 대한 처우) ① 모집정지에 따른 학과전환자는 학과전환 연봉계약 전임교원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03. 01.>

② 학과구조조정에 의해 학과전환을 원하는 교원은 전임교원확보율이 60% 이하인 학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③ 학과전환이 결정된 해당교원은 3년 이내 관련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 학과전환규정 제9조제2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03. 01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제14조(구조조정위원회) ① 학과구조조정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구조조정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처·원·단장,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③ 구조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5조(구조조정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1. 구조조정학과 자구노력계획서 심의, 구조조정 학과 선정, 학과의 통폐합·분리·신설·명칭변경, 학과전환, 정원조정,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2. 구조조정학과 교원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1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8조의 ③항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절대 점수

평가지표	절대점수	비고
신입생(정원내) 총원율	91% 이상	
재학생(정원내) 총원율	80% 이상	
건보 취업률	60% 이상	